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4. 4. 27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강화로 주차장 사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 도심지역내 심각한 주차 난 해소

2. 수정 주요골자

- 개정조례(안)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호 중 “50미터이내”를 “30미터이내”로 “100미터이내”를 “50미터이내”로 강화하고
-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2】 중 위락시설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를 “시설면적 70㎡당 1대(시설면적/70㎡)”로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를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로 수정 하므로써,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장 사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지역내 심각한 주차 난 해소코자 함.

3. 수정 내용

- 개정조례(안)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호 중 “50미터이내”를 “30미터이내”로 “100미터이내”를 “50미터이내”로 수정.

-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2】 중 위락시설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를 “시설면적 70㎡당 1대
(시설면적/70㎡)”로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를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로 수정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개정조례(안)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호 중 “50미터이내”를 “30미터이내”로 “100미터이내”를 “50미터이내”로 수정.
2.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2】 중 위락시설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를 “시설면적 70㎡당 1대 (시설면적/70㎡)”로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를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로 수정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생략〉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u>150미터</u> 이내 또는 도보 거리 <u>300미터</u> 이내 2. 〈생략〉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현행과 같음〉 1. - - - - - 50<u>미터</u> 이내 - - - - - <u>100미터</u> 이내 2. 〈현행과 같음〉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개정안과 같음〉 1. - - - - - 30<u>미터</u> 이내 - - - - - <u>50미터</u> 이내 2. 〈개정안과 같음〉

· 제14조 중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시설물	설치 기준	시설물	설치 기준	시설물	설치 기준
1. 생략	시설면적100㎡당 1대	1. <현행과 같음>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1. <개정안과 같음>	○ 시설면적 70㎡당 1대 (시설면적/70㎡)
2. 생략	시설면적 150㎡당 1대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과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의 경우 80㎡당 1대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 -----	2. <개정안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3. 생략	시설면적200㎡당 1대	3. <현행과 같음>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3.<개정안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4.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초과 200㎡ 이하의 경우 예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7세대(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5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제외 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시설면적-150㎡)/100㎡]	4.<개정안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시설물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5.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당 1대 다만, 7세대(가구)이상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7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5. 다가구주택, 공동 주택(기숙사 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5.<개정안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6. <생략>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6. <현행과 같음>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 × 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 1) ○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6.<개정안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7. <생략>	시설면적 300㎡당 1대	7. <현행과 같음>	○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7.<개정안과 같음>	○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200㎡)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별표2】 【비고】

현행	개정안	수정안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 마. <생략> 바. <u>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u>	1. - - - - - - - - - - - - - - - -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u>	1. <개정안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u>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u>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3. - - - - - - - - - - 부지(지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 - - -	3.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u>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u>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한다.	4. ----- ----- ----- ----- 다만,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 ----- -----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 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6. <u>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u> <u>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u>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u>소숫점 이하인</u>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 9. <생략>	6. <u>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u> 7. - - - - - - - - - <u>1대 미만인</u> - - - - - - - - - - - - - - - - - - - - - - - - - 8. ~ 9. <현행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8 ~ 9. <현행과 같음>